

#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06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2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3. 1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복지지원과장 천미옥)

#### 가. 개정이유

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  
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근거를  
마련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 
수행과 원활한 운영 도모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○ 제명변경

- (현행) 「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(변경) 「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○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,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 제3조)

○ 센터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
○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(안 제 7조)

○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  - 검토결과: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7006호(2024. 12. 6.)]
-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852호
    - 가) 예고기간: 2024. 12. 2. ~ 2024. 12. 22.(20일간)
  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 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없음
  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참조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 - 제명 변경
    - 「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→ 「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  - 설치 및 위치(안 제2조)
    -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를 설치하고, 그 위치를 규정하였음.
  - 시설 및 업무(안 제3조~제4조)

- 가족센터의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였음.
- 조직 및 운영, 운영위원회(안 제5조~제6조)
  -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,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위탁(안 제8조)
  -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의 개소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